

●울산전파관리소고시 제2026-02호

「전파법」 제21조(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) 제5항에 따라 무선국(항공국)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(고시대상무선국) 및 제35조(무선국의 고시사항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02월 05일

울산전파관리소장

항공국 개설허가 고시

1. 허가연월일,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

허가(변경)연월일	허가번호	시설자의 명칭	비고
2026. 1. 29.	33-2026-26-0000001	섬에어 주식회사	-

2. 무선국의 종별,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(호출명칭)

무선국의 종별	무선설비의 설치장소	호출명칭
항공국	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, 울산공항(송정동)	섬에어울산

3. 주파수, 전파의 형식,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

주파수	전파의 형식	점유주파수대역폭	안테나공급전력
131.975 MHz	6K00A3EJN	6 kHz	10 W